

대전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10489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5. 1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D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실질적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하게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오현석

## 채권의 표시

피고가 소외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3,35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끝.

## 청 구 원 인

## 1.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소외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6074)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소외 C은 원고에게 151,80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3. 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소외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 2. 소외 C의 무자력(사해행위 당시 기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승소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가려 하였으나, 소외 C에게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 적극재산

소외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채권을 양도할 당시(2021. 5. 10.)를 기준으로 소외 C의 적극재산은 소외 E과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전부였습니다. 소외 C이 ① 소외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6,000만 원이었고,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소외 C이 피고에게 양도한 13,35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었습니다.(갑 제4호증 판결문)

즉 소외 C의 적극재산은 사해행위 당시인 2021. 5. 10.자를 기준으로 ① 소외 E에 대한 채권 6,000만원, ② 소외 D에 대한 채권 14,948,025원(13,352,330원 + 1,547,407원(13,352,330원 X 6% X (1+340/365)) + 48,288원(13,352,330원 X 12% X 11/365))으로 합계 74,948,025원입니다.

####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5. 10.)를 기준으로 소외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177,425,382원(151,807,748원 + 3,956,956원(151,807,748원 X 6% X 159/366) + 21,660,678원(151,807,748원 X 12% X (1+69/365)))입니다.

#### 다. 소 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소외 C의 적극재산은 74,948,025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177,425,382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의 지인인 소외 E과 D이 소외 C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C이 소외 E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중 소외 C이 소외 E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6,0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화해권고결정문, 갑 제6호증 압류추심결정문)

#### 3. 사해행위

소외 C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소외 C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4. 원상회복 의무

원고가 소외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소외 C이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C이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금액 전액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심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소외 D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모두 취소되고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